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검토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Revie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Foreign Victims of Crime

—With Reference to the Case of Germany and Switzerland—

박 상 민**

Park, Sang-Min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외국 사례의 검토 |
| II. 외국인 범죄피해 현황 및 실태 | V. 시사점 및 개선방안 |
| III.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현행법 및 제도와 한계 |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은 취업, 결혼 등을 이유로 체류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근로관계 또는 가정 내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통상 외국인은 그 나라에서 소수자에 해당하여 자국민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사회적·언어적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제3차(’17~’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

<https://doi.org/10.35148/ilsilr.2021..48.487>

투고일: 2021. 1. 15. / 심사회의일: 2021. 2. 4. / 게재확정일: 2021. 2. 15.

* 본고는 필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김혁/황태정/박상민,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20을 이 학술지에 신기 위해 필자가 집필한 부분을 포함하여 재구성하고 가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Lecturer at School of Law, Chungbuk University, Ph.D.

을 지적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과업인 만큼, 외국의 입법례나 제도 운용에 대한 고찰은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무 및 범죄예방 의무와 사회보장의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우리 헌법은 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시되어야 한다(제10조). 또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제11조),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은 물론, 재판절차 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형사절차 상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경우 등을 참고하여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헌법상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국내 외국인의 범죄피해와 사법 및 지원과정에서의 취약성에 우리 현행법과 제도는 어떻게 보호·지원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들을 파악해 보았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발전되어 있는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주제어] 외국인 범죄피해자,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독일 피해자보상법, 스위스 피해자지원법

I. 들어가는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말 기준 252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51,849,861명)의 약 4.9%에 이르고 있다.¹⁾ 외국인은 취업, 결혼 등을 이유로 체류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²⁾ 상대적으로 근로관계 또는 가정 내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국적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 기타 선진국

1) 여기에 불법체류 외국인 390,281명까지 합산하면 국내 외국인 수는 2,914,937명으로 약 300만 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인구수의 5.6%에 해당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 26면 참고, 검색일: 2020. 12. 30.).

2)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의 체류비자 중에서도 재외동포(F-4),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의 비율이 높고,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거주(F-2) 및 영주(F-5)자격의 체류외국인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위의 자료, 39쪽 참고).

국적의 외국인보다 폭행·상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 2019년 전체 범죄자(1,585,638명) 가운데 외국인 범죄자가 약 2.3%(36,400명)를 차지하고 있고³⁾ 외국인 범죄의 피해자는 외국인인 경우도 많다는 점, 그리고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은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피해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인 2020년 5월 이주여성 관련 상담소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총 상담 건수 20,555건 중에서 가정폭력이 6.2%(1,268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경찰에서 검거한 가정폭력범죄 41,905건 중 다문화가정은 1,273건으로 약 3.04%에 이르고 있다.⁴⁾

하지만 통상 외국인은 그 나라에서 소수자에 해당하여 자국민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할 수 있고, 특히 사회적·언어적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⁵⁾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제3차(’17~’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과업인 만큼, 외국의 입법례나 제도 운용에 대한 고찰은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무 및 범죄예방 의무와 사회보장의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우리 헌법은 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시되어야 한다(제10조). 또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제11조),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은 물론,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제30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형사절차상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3) 경찰청, 2019 경찰범죄통계, 2020, 검색일: 2020. 12. 30.

4) 경찰청, 경찰백서, 2020, 검색일: 2020. 12. 30.; 다누리콜센터 상담실, 상담통계,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board/bs/boardList.do>>, 검색일: 2020. 11. 30.

5) 실제로 외국인이 폭력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25.3%로 나타났다(최영신/장현석,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7, 132쪽).

관련 법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경우 등을 참고하여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범죄피해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후(II), 헌법상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우리 현행법과 제도는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어떻게 보호·지원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들을 파악한다(III). 다음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우리보다 국내 외국인 수도 많으면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정책도 발전되어 있는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IV),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V).

II. 외국인 범죄피해 현황 및 실태

현재 외국인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⁶⁾ 일단 출입국 자료나 체류 외국인 통계, 국제결혼통계 등의 국가 기본통계를 통해 국내 인구 대비 외국인 수를 파악하고 외국인의 피해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해 보았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2019년에는 17,880,503명으로 전 년 대비 14.4%(2,249,981명↑) 증가하였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2,524,656명으로 전 년 대비 6.2%(157,049명), 2015년 대비 32.9%(625,137명)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⁷⁾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15년 3.7%에서 2019년 4.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을 국적·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43.6%(1,101,78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8.9%(224,518명), 태국 8.3%(209,909명), 미국 6.2%(156,982명), 일본 3.4%(86,196명), 우즈베키스탄 3.0%(75,320명) 순이다.⁸⁾

6) 2006년부터 ‘외국인 인권 보호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경찰서들이 3~6개월간의 신고접수 및 처리 결과를 운영 간담회 등지에서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확하고 종합적인 통계자료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앞의 자료, 26쪽 참고.

8) 위의 자료, 47쪽.

매해 약간은 변동은 있지만,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이 55~60%,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외국인이 25~30%, 이외에 선진국 및 기타 국적 외국인이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어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는 200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일본, 중국 및 필리핀을 비롯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으로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에 있는 한편, 최근 5년간 연도별 결혼이민자의 수는 약 15~16만 명 정도로, 여성이 전체의 82.6%(137,094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⁹⁾ 2019년 기준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여성이 74.8%(17,687명)로 다수를 이루고 있고, 출신국은 중국과 동남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¹⁰⁾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만 해도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나타난 다문화 가구 수는 14만4천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33만 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십여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동안의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머지않아 국내 다문화가족의 수는 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¹¹⁾

이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외국노동력이 증가하고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외국인 피해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 수 또한 늘어날 수 있음이 예상된다.

2. 주요 피해 유형 및 실태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별 취업자 현황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를 파악해 보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에 유학생과 재외동포, 결혼이민자까지 고려하여 2015년부터 80만 명대를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국적동포와 미등록 체류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약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취업하여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범죄피해는 주로 임금체불, 폭행 및 상해, 성폭행 등을 들 수 있다. 고용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직장을

9) 위의 자료, 50쪽.

10) 위의 자료, 50쪽.

11) 최윤정 외(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19.3., 3쪽.

않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생계형 범죄인 재산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폭행 및 상해로 인한 범죄피해 비율이 69%로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¹²⁾ 2017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폭력피해자와 이들을 가해한 사람의 관계는 직장동료가 36.8%, 직장상사가 23%로 주로 직장 사람들에게 의하여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를 당하는 장소 역시 55.2%가 직장에서 당한다고 응답하여 외국인에 대한 직장 내 폭력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 범죄피해자는 주로 성폭력 피해자였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경우,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처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약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하려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외국인 범죄피해를 양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¹⁴⁾

외국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¹⁵⁾ 대신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담의뢰인의 경우 성폭력 상담과 기타상담의 구분이 되어있지는 않으나 이주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해 1,000건 정도 상담을 의뢰한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해 성폭력상담소에서 이주여성과 관련한 상담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고, 또한 다누리콜센터,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및 각 지역의 이주여성 지원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일반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수는 내국인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⁶⁾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또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7년 11월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12) 최영신/장다혜/오경석,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8, 56쪽.

13) 최영신/장현석, 앞의 책, 131쪽.

14) 박형민/조성현/김선희,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II), 형사정책연구원, 2017, 183쪽.

15) 참고로, 2018년 국내 성폭력 발생 건수는 31,396건으로 2008년(15,970건) 대비 약 2배 증가하였고 전년(32,234건) 대비 838건 감소했다 (여성가족부, 주요 통계,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참조).

16) 주로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내담자의 상담 요청이 많고 내국인 중에서도 본인, 가족·친인척, 동료·이웃·교사 순으로 상담을 요청하였다(기타 제외) (김보화 외(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8, 38-39쪽).

건수 현황은 2,584건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564건의 다문화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연도별로 2013년 202건에서 이듬해 123건으로 내림세를 보이던 다문화 가정폭력은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¹⁷⁾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이혼 사유 중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5.7%인 것에 비해, 다문화가족의 경우 폭력과 부부갈등이 54.5%의 이혼 사유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에서의 가정폭력이 내국인 가정폭력보다 더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이주여성 관련 상담소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통해 접수된 범죄피해사례도 주로 가정폭력 피해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인 2020년 5월 상담내용 총 20,555건 중에서 7,773건(37.8%)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문제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이 1,268건(6.2%), 부부갈등이 1,381건(6.7%), 이혼문제가 968건(4.7%), 그리고 일반법률 문제가 1,359건(6.6%) 등으로,¹⁸⁾ 여전히 가정폭력 등이 문제되고 있다. 한국어에 취약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이나 시부모의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응을 하거나 남편을 떠나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¹⁹⁾

아울러 외국인 이주여성의 주된 피해 유형 중 하나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로 인한 피해이다. 일자리를 구해, 생활환경 변화를 위해 본국을 떠나 온 다양한 체류자격과 국적의 여성들은 처음의 이야기와 달리 유흥업소나 마사지업소·보도방 등에서 성적 서비스를 할 것을 강요받는 등 인신매매·성매매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²⁰⁾

III.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현행법 및 제도와 한계

1. 헌법상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

외국인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17) 이데일리 2017. 9. 10. 자 기사 “다문화 가정폭력 최근 5년간 2584건 발생”,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25366616058808&mediaCodeNo=257>

18) 다누리콜센터 상담실, 상담통계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board/bs/boardList.do> 참고.

19) 박형민/조성현/김선희, 앞의 책, 190쪽 이하.

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간 자료 등에는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서, 2019, 14쪽 이하.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제6조 제2항)고 규정하여 상호주의에 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²¹⁾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 가운데 적어도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일지라도 그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²⁾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기본권의 성질에 좌우되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이 외국인에게 인정된다.”²³⁾고 하여 ‘인간’의 권리인가 ‘국민’의 권리인가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판단한다.

외국인을 기본권의 향유 주체라고 볼 수 있다면,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제10조), 재판절차 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제30조)이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인정되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그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적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 인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 피해자 역시 그 주체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범죄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재판절차 진술권 및 구조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그 행사절차가 구체화 되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²⁴⁾ 상호주의에 의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외국인을 이러한 청구권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²⁵⁾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을

21) 부정설은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14-315쪽), 헌법 제6조 제2항 역시 특수한 법적 권리일 뿐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홍성방, 헌법학 개정6판, 현암사, 2009, 277쪽). 외국인에게 국내법적인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성낙인, 헌법학 제20판, 법문사, 2020, 341면; 정중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323쪽).

22)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7, 381-386쪽; 성낙인, 위의 책, 340-342쪽;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제8판, 박영사, 2017, 406-407쪽.

23)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등.

24)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75 결정.

25)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233-234쪽;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

없거나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²⁶⁾ 그렇다면 이 기본권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일정한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이것이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외국인에게는 사회적 기본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경제질서와의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²⁷⁾ 헌법재판소 역시 특정한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만이 아니라 자유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그러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²⁸⁾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고 아울러 국가에게는 범죄예방의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문제는 국적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당위성은 인정되므로, 외국인 역시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²⁹⁾ 따라서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기본권의 보장과 결부된 청구권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³⁰⁾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2. 관련 개별 법률 및 제도와 운영 현황

여러 개별 법률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보면, 먼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제3조), 피해자의 국적이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26)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27) 이은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8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3-14쪽;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5판, 집현재, 2020, 192쪽.

28)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29) 같은 의견 김혁/황태정/박상민,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대검찰청, 2020, 33쪽.

30) 권영성, 앞의 책, 319쪽.

구조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여(제23조), 상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제4조의6, 제5조 제4항, 제7조의2 제1항 제3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8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의 보호·지원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외국인 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3항 제4호).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해 3개월 범위에서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이나 법원 동행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지원시설을 규정하고(제11조 제3항), 이러한 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각 기관은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재 전국에 59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돌봄 비용, 취업지원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상담 등을 통한 심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이루어진다.³¹⁾ 하지만, 2019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건수(1,477건)는 전체 내·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건수(109,850건)의 1.34%에 지나지 않고, 이는 같은 해 기준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수 등과 비교했을 때,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워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지

31) 나아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범죄피해가 확실하고 피해자의 상황이 열악할 경우에는 센터 자체의 자금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최영신/장다혜/오경석, 앞의 책, 50-51쪽).

못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³²⁾

통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경찰 송치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외국인은 언어적 한계, 한국의 수사 및 사법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체류자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가 있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상담소 종사자들의 주된 의견이다.³³⁾ 이에 범죄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호). 그러나 동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고, 피해자 외의 목격자 등에게는 통보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³⁴⁾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³⁵⁾ 또는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신고 및 지원을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도움센터’³⁶⁾등을 통해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통역인을 활용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한국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통역을 활용하지 않거나, 통역 인력풀이 부족하여 언어권에 따라서는 통역의 활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통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³⁷⁾ 통역인에

32) 김혁/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42-44, 47쪽.

33) 최영신/장다혜/오경석, 앞의 책, 88쪽 이하; 김혁/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59쪽 이하 참고.

34) 외국인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적지 않고, 그때에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목격자의 진술 내지 증언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와 달리 목격자는 통보의무의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격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김혁/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68쪽 이하.

35)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하여 13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로 상담을 실시하면서, 상담자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가 있는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의료, 법률, 검찰, 경찰 등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다누리가족지원포털, <www.liveinkorea.kr>, 검색일: 2020. 11. 30.).

36) 이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종교단체 등에 개설한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 및 민원 접수창구로써, 외국인이 도움센터를 방문하여 범죄피해를 신고하면 센터 운영자가 이를 외사 경찰관에게 전달하고, 외사 경찰관은 경찰서 담당 부서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경찰청,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2019, 검색일: 2020. 11. 12.).

37) 김혁/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70쪽 이하.

대한 특별한 연수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누리콜센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는 자체 연수를 통해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통역인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³⁸⁾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접수하면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형사절차상 권리, 피해지원절차 및 기관 등이 외국어로 번역된 권리고지서를 제공하고 있는데,³⁹⁾ 법률용어가 어려워 이해를 못 하겠다고 호소하는 경우 등⁴⁰⁾ 외국인을 배려한 권리 고지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각 사법절차 별로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시되는 사건통지는 외국인에게도 한국어로만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건통지제도는 형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⁴¹⁾ 더불어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터뷰 조사결과를 보면, 이혼소송, 가정보호사건, 형사재판 할 것 없이 외국인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내국인에 비하여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등, 재판단계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수사단계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⁴²⁾

IV. 외국 사례의 검토

1. 독일

1.1 외국인 피해자 현황

2019년 기준 독일국민은 8,300만 명이고, 이주배경을 가진 자⁴³⁾ 2,120만 명, 독일에

38) 김혁/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73쪽.

39)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용 사건처리중간·결과통지서(5개 언어),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10개 언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있고(경찰청 외사국, 「피해자 중심 경찰활동」 정착을 위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 계획, 2018.7.5.), 검찰청에서는 17개 언어로 번역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40) 김혁/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71-72쪽.

41) 김혁/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74쪽.

42) 김혁/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74-75쪽.

43) 독일은 2005년 이민법 실시 이후 인구조사에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이주 배경을 인구통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독일 연방 통계청은 ‘이주배경을 가진 자’(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1949년 이후 독일로 이주한 사람,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인 가운데 부모가 독일로 이주했거나 외국인인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명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120만 명, 귀화자 128,900명으로 독일 인구의 약 39%가 외국인이 다.⁴⁴⁾ 출신 국가는 터키인이 전체 외국인의 13.2%이고, 그다음은 폴란드(7.7%), 그 외 시리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벨기에, 아프카니스탄 등 다양하다.⁴⁵⁾ 이렇게 독일 내의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독일 사회에서는 이주민과 관련한 사회통합문제와 인권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독일 연방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독일 전체 범죄피해자(1,013,048명)의 22.3%에 이른다.⁴⁶⁾ 국적별로 살펴보면 터키(12%), 시리아 (9.9%), 폴란드(6.9%), 아프카니스탄, 루마니아 등의 순이다.⁴⁷⁾ 특히 폭력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외국인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함⁴⁸⁾에 따라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적용대상 또한 확장되었다.

1.2 외국인 피해자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1.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률

독일에서는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사회복지 국가 이념에 근거하여 1976년에 ‘폭력 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OEG, 이하 피해자보상법)⁴⁹⁾이 제정되었다.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권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07, 275쪽 이하; 이규영/김경미,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의 참정권”,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158쪽 이하 참고.

44) 독일 연방 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_inhalt.html>, 검색일: 2020. 11. 15.

45)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초 이후 독일에 유입된 이민자의 대부분은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지의 동유럽 출신들이다. 또한 남유럽의 경제 악화로 인하여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지에서도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터키 출신의 순 유입은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높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등은 2015년 이후 난민사태에 끼어 폭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6) Bundeskriminalamt(Hg.),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 Bundesrepublik Deutschland Jahrbuch 2019 Bd. 2 Opfer, 2019, 11, 24쪽.

47) Bundeskriminalamt(Hg.), 위의 책, 24쪽.

48) Bundeskriminalamt(Hg.), 위의 책, 24쪽 참조.

49) 이 법률은 전쟁·군무 등에 의하여 건강상 손상을 입은 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 규정한 전쟁피해자보상법(Bundesversorgungsgesetz)에 의한 사회보장을 폭력행위 피해자에게도 준용한 것이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주요 법률인 이 법에는 독일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한 명시되어 있다.

일단, 독일 영토 내 또는 독일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고의의 위법한 물리적 폭력행위나 고의적인 독극물의 첨가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위험한 수단으로 행해진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 또는 그러한 폭력에 대한 적법한 방어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는 신체 피해와 경제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피해자보상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러한 보상권은 1976년 제정 당시에는 독일 시민과 그리고 독일과 상호보증이 되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가 그 후 개정으로 인해 그 적용대상을 넓혀왔다. 그래서 현재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나 독일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유럽연합 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 외국인 또는 상호주의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물론(제1조 제4항),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 중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은 독일국민과 동일한 보상을 받고, 3년 미만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은 소득과 무관한 보상을 받으며(제1조 제5항), 6개월 미만의 임시 체류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제1조 제6항⁵⁰⁾). 또한 이와 같은 보상권 있는 외국인이 추방 또는 강제 출국 되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출국하였거나 출국 후 6개월 이내 재입국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를 시작했던 해당연도에 대한 월 기초연금의 3배 범위에서 보상을 받는다(제1조 제7항 제1문). 나아가 독일국민이나 앞에서 언급한 범위의 외국인이 독일 영토 내에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임시거주하고 있는 때 국외에서 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제3조a).⁵¹⁾

50) 6개월 미만의 임시 체류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는, 독일국민과 3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위에서 언급한 제1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되는 집단에 속한 외국인이거나 혹은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가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983년 11월 24일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된 회원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1) 이런 경우, 신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는 신체 피해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즉 상해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상 재활과 치료의 필요한 조치를 받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일시금을 받는 등의 보상을 받는다(제3조a 제1, 2항).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서 폭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를 포함한 유가족은 필요한 심리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항 제3문).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이송비용과 장례비용

범죄피해자보상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주(州)에서 보상에 관한 책무를 지고(제4조 제1항),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자가 독일 영토 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보상비용을 부담한다(제4조 제2항). 연방정부는 이 법에 의한 재정적 지원으로 발생하는 주(州) 정부의 지출에 대하여 40%를 부담한다(제4항 제3항 제1문).

한편 피해자보상법은 보상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유는 물론 국적과 무관하다. 즉,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상해를 유발하는 등 보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나 보상신청인이 모국에서 정치적 갈등이나 무력충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조직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폭력범죄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은 거절될 수 있다(제2조 제1항). 또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의 규명과 행위자의 기소에 최선의 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 특히 수사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제2조 제2항).

범죄피해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국 의무를 지고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지만, 예를 들어 범죄피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범죄의 목격자로서 해당 사건의 규명을 위해 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잠정적인 체류를 위한 체류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체류법 제25조 제4a항, 제4b항).

1.2.2 지원체계 및 내용

독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민간단체가 범죄피해자지원에서 선도적·중심적 역할을 하고 여기에 국가의 각종 지원제도가 상호 간에 적절하게 연계되어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독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기관이 따로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지원에 협력한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는 주 법무부와 협력하여 형사절차 및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가 담긴 피해자 안내서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발행한다.⁵²⁾ 그 밖에 연방 노동사회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

에 대하여 1,506유로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같은 항 제4문).

52) 독일 연방 법무부, 피해자 안내서, <<https://www.bmji.de/SharedDocs/Publikationen/DE/Opferfibel.pdf>>, 검색일: 2020.

11. 15. 이 책자는 베트남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알바니아어, 세르보 크로아티아어, 터키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크로아티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및 루마니아어

방 내무부가 피해자지원에 부분적으로 협력한다.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형사사법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 및 보상,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역할 등에 관해서 고지할 의무를 가진다. 피해자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06조h), 피해자가 소송절차에서 통·번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무료 통역이 제공된다(법원조직법 제185조, 제187조).⁵³⁾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민간단체 역시 외국인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권리·보상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설명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상담은 불법체류 여부 또는 출신 국가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피해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방 전체에 걸쳐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바이서링’(Weisser Ring e.V.)⁵⁴⁾과 ‘독일피해자지원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n in Deutschland e.V.: ado)⁵⁵⁾가 있는데, 이들은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피해자지원 유럽 네트워크의 구성단체로 독일 이외의 다른 국가에 있는 피해자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유럽 전체에서 모든 범죄피해자의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주에서 특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피해자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그중 인신매매 및 이주여성폭력 방지 협회는 폭력 및 인신매매를 경험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전국 기구로서, 여성상담소, 이주민 프로젝트, 여성보호시설, 성매매여성 상담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⁵⁶⁾ 그리고 ‘여성의 집’은 폭력피해 여성의 쉼터로, 전국에 약 400여 개가

등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53) 그러나 양질의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다(FRANET,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e EU: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victims's rights in practice. Germany, 2014, 19쪽).

54) ‘바이서 링’은 독일의 피해자지원 민간단체 중 가장 큰 자원봉사단체로, 주된 업무로는 ① 상담, 동반 서비스 등 정신적 지원, ② 치료, 간호 등 의료적 지원, ③ 의료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다른 기관의 원조 중개, ④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형사처리 일정의 동반, ⑤ 법적 절차 등에 관한 조언과 비용의 지원, ⑥ 의료비나 생활비용 등의 지원, ⑧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휴양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바이서 링 홈페이지, <<https://weisser-ring.de/>>, 검색일: 2020. 11. 17.).

55) ‘독일피해자지원협회’는 각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피해자지원단체의 상부조직으로 작용한다. 독일피해자지원협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하는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활동한다: ① 모든 범죄유형의 여성 및 남성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② 강간 및 강제추행 된 아동 및 여성을 위한 긴급전화그룹과 상담소, ③ 반(反)동성애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원호하는 단체, ④ 독일아동보호연맹(DKSB)의 지역협회, ⑤ 공판에서 증인의 보호를 위한 기관 등.

56) 인신매매 및 이주여성폭력 방지 협회 홈페이지, <<http://www.kok-buero.de/wir-ueber-uns.html>>, 검색일: 2020. 11. 17.

있고 약 6,000명 정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은 물론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⁵⁷⁾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 불 소통으로 인해 노동시장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독일어와 독일 사회의 이해를 포함한 언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⁵⁸⁾ 또한 효과적인 심리지원 등을 위해 이주민을 상담원으로 양성하는 데도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2. 스위스

2.1 외국인 피해자 현황

스위스의 경우, 2019년 기준 총인구 8,606만 명 중 25.3%가 외국인이며 그 가운데 대다수인 81.5%가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국적을 가졌다.⁵⁹⁾ 스위스 연방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스위스 총 범죄피해자(237,964명)의 약 30%가 외국인이다.⁶⁰⁾

스위스에서는 최근 특히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연방 경찰청 통계에서도 그 피해자 수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는 11,058명으로 전년 대비 3.7%가 증가하였는데, 그중 49%가 외국인이다.⁶¹⁾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대부분이 부부관계(사실혼 포함)인데, 최근 3년간 전 연령대에 걸쳐서 외국인 여성이 스위스인 여성보다 현재 부부관계에서만 아니라 이전 부부관계에서 피해자가 된 경우가 약 3.5배 더 많았다.⁶²⁾

57) 여성의 집 협회 홈페이지, <<http://www.frauenhauskoordinierung.de/>>, 검색일: 2020. 11. 17.

58) 이에 대해서는 박란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역할 연구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장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94쪽 이하.

59) 스위스 연방 통계청, 스위스 인구, <<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bevoelkerung/stand-entwicklung.html>>, 검색일: 2020. 11. 16.

60)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 스위스 장기체류 외국인이 46,400명이고, 망명자가 1,796명, 그 외 외국인이 10,583명, 체류 자격이 결여된 외국인이 1,529명이다(위의 자료, 접속일: 2020.11.16.).

61) 스위스 연방 통계청, 가정폭력 피해자, <<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kriminalitaet-strafrecht/polizei/haeusliche-gewalt.html>>, 검색일: 2020. 11. 16.

62) 스위스 연방 통계청, 경찰 범죄통계, 2020, 검색일: 2020. 11. 16.

2.2 외국인 피해자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2.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스위스는 연방헌법 제124조에서 “형사피해자 지원”이라는 표제 하에 “연방과 주는 형사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으로 피해받지 않게 지원받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근거로, 1991년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방법률’(Bundesgesetz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OHG, 이하 피해자지원법)이 제정되었다. 현재는 2007년 3월 23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지원법에 따른 구조대상인 피해자는 범죄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완결성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유사한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족)를 포괄한다(제1조 제1문, 제2문). 이에 스위스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주소지와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지원은 스위스 내에 주소지를 가진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제3조 제2문). 또한 외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스위스에서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제공될 수 있는 지원 이외에 추가로 주소지에서의 치료 비용에 대한 비용지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14조 제2문). 더불어 피해자의 지원 청구권은 가해자가 수사를 받았는지, 가해자의 행위에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행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1조 제3문).

지원내용은 피해자 상담 및 긴급 조력, 상담소를 통한 장기간 조력, 제3자의 장기간 조력에 대한 비용의 지원, 보상, 법적 비용의 면제 등을 포함한다(제2조).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상해 및 사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루어지며, 범죄피해로 인해 노동력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 내지 자녀 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 역시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제19조). 이러한 국가 보상 이외에도 피해자지원법은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정신의학적, 사회적, 물질적 그리고 사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1문), 이를 위해 연방의 기금 지원으로 각 주 산하에 1개 이상의 상담소(자문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첫 대면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상담소의 존재와 지원시스템이 있음을 알려줘야 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신원을 상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그리고 상담소 직원에게는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제11조).

2.2.2 지원체계 및 내용

범죄로 인해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국적 불문하고 피해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그리고 법적인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피해자지원법 제5조). 상담소의 설립은 각 주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각 주는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사설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실행된 상담이나 보상 등에 관한 여러 통계를 스위스 연방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⁶³⁾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범죄피해자가 현재의 직접적인 피해상태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임시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하거나 의학적인 치료도 제공되며 일시적인 주거 장소 내지 긴급 숙소,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적 조력에 대한 정보 및 법적 조언 등이 제공된다. 피해자지원의 두 번째는 장기간에 걸친 조력의 제공이다. 여기에는 범죄피해의 충격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상담소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제공하거나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 및 지원조직을 보유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일상적인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⁶⁴⁾

덧붙여 최근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으면서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갈렌(St. Gallen) 주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03년 경찰법에 가정폭력에 대한 처분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부터 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⁶⁵⁾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가정 내 여성 피해자의 보호에

63) 한 예로, 2019년 범죄피해자에 대해 이루어진 상담은 총 41,154건이었고, 그중 외국인이 상담받은 경우는 12,406건이다(스위스 연방 통계청, 피해자 지원, <<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kriminalitaet-strafrecht/opferhilfe/beratungen-leistungen.html>>, 검색일: 2020. 11. 16.).

64) 위의 자료, 검색일: 2020. 11. 16.

65) Miriam Reber, 10 Jahre polizeiliche Massnahmen gegen häusliche Gewalt im Kanton St.Gallen, Kanton St.Gallen Koordinationsstelle hausliche Gewalt 2013, S. 4.

서 출발하고 있다.⁶⁶⁾

V.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지원 대상·범위의 단계적 확대

현재 우리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23조). 법무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⁶⁷⁾ 피해 외국인의 대다수가 저개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호보증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행법상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보호·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⁶⁸⁾ 오히려 상호주의의 원칙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제11조)의 취지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법상의 원칙⁶⁹⁾을 고려하면, 외국인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부당한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국가의 범죄방지 책임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정되고,⁷⁰⁾ 이에 본래 피해자 구조는 국가 자신의 범죄예방의무 불이행 내지 형벌권 독점에 근거한 자기책임적 성격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국가 실현의 측면에서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로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⁷¹⁾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

66) 김혜정, “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129쪽 이하.

67) 최영신/장다혜/오경석, 앞의 책, 27쪽.

68) 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관련 입법과 문제점 등에 관해서는 황태정/오경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지역적·국제적 협력”,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8, 32쪽 이하.

69) 범죄피해자 지원의 국제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UN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대한 기본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지원을 천명하고 있다.

70)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결정.

에서 범죄가 발생한 이상 외국인 역시 피해자 구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 스위스 등의 예에서도 상호보충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도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과 더불어, 일단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구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할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²⁾ 독일의 경우와 같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 기간과 적용대상에 관한 적절한 요건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검찰은 2019년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90일 이내의 단기여행자를 제외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경제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미등록 외국인은 여전히 지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해당 외국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피해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드러난다. 적어도 고의의 범죄로 가장 높은 가치의 법익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추의 필요성과 적절한 형벌권 실현으로 인한 이익이 불법체류자의 퇴거에 따른 이익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중요 참고인 또는 증인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내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통보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⁷³⁾

나아가 인간의 존엄·가치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의료적·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국적 및 체류 지위와 상관없이 실시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책무를 명문화하고 있고, 피해자지원법에서는 피해자 개념을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완결성을

71) 김혜경,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21-123쪽.

72)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회기만으로 폐기되었지만,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까지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21., 의안번호 2017653)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73) 단, 동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심사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김형/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179쪽).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여, 국적과 관계없이 스위스 내에서 입은 범죄피해는 물론,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스위스 내 주소를 가진 외국인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구조의 대상인 피해를 초래한 범죄행위가 범죄자의 책임있는 행위로 인한 것인지 또는 범죄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원과 구조를 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형법규정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는가(형법상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범죄행위가 피해자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완전성을 침해하였는가 하는 점뿐이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구조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 지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지원체계 정비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기관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크게 국가기관과 민간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의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거나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적절하게 연계되어 조직화 되고 상호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민간단체인 바이서 링에서부터 시작되어 피해자지원시설 등은 각 주의 복지단체나 교회 관련 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며, 주정부는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연방정부도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는 식의 피해자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상담소(자문센터)가 있고 여기에서는 주로 법률자문이나 심리치료적 지원이 행해진다. 이런 예산 지원과 함께 스위스 자문센터 간의 연계망도 증대되었고, 그럼으로써 자문센터의 무 분별적인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⁷⁴⁾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분담하여 제공하는 독일과 스위스의 지원체계는 민간과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와 관련된 과제를 시사한다.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재화를 위하여

74) 장병일/성홍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35쪽.

수사절차에서부터 사후구조금 신청단계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민간 및 정부 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구조금의 지급 등 구체적인 절차의 시행은 피해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상담과 법률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현재의 체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⁷⁵⁾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밀접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동 센터가 가장 친근한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미미한데, 향후 동 센터로 하여금 외국인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⁷⁶⁾

아울러 운영예산도 정부의 기금보조 이외에 독자적인 기금마련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에서 중요한 자원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자원봉사의 훌륭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⁷⁷⁾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⁷⁸⁾

3. 사법접근과 절차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통역의 의무적 제공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독일과 스위스에는 피해자지원 관련 정보 등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 무료상담서비스는 합법적 거주 여부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또한 외국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접근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

75) 원혜옥/손진/홍민지/김재희/박상민/박경규, 범죄피해자보호제도론, 도서출판 피데스, 2018, 258-259쪽.

76) 김현/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180쪽.

77) 최영승/윤동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방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효율화 방안연구, 법무부, 2006, 135면에서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꾸준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공식적인 사회봉사활동 경력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예로 들고 있다.

78) 자원봉사자의 실태분석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진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탐색: 자원봉사자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2016, 244쪽 이하 참조.

놓았으나 언어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단계별로 보면, 일단 각종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신고 및 접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고,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내국인조차 어려워하는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사건의 접수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만 외국인 피해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실질적인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통역 인력풀 현황을 감안할 때 우선 외국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즉시 통역이 어려울 때에는 초기 대응이 이루어진 후에도 통역을 거쳐 피해상담이나 신고내용을 의무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⁷⁹⁾

또한 사건에 대한 정보권 보장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의 전제조건이 되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는 형식적 사건통지가 외국인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외국인에게는 외국어로 된 서면(또는 SMS) 통지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리 고지 역시 법률용어를 최대한 순화하고 외국인 관련 지원 기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언어로 지원절차를 쉽게 설명하는 기능을 넣는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법절차 내 통·번역 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의 경우 통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8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도 통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가정보호사건에서도 통역의 의무화는 그대로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과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은 통역을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제34조 제1항) 통역 의무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정보호사건에서 통역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⁸⁰⁾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 관한 통역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9) 김혁/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174쪽.

80) 김혁/황태정/박상민, 앞의 책, 175-176쪽.

4.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관한 국가 통계 구축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계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에는 각 연방 통계청 및 경찰청 등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국적별로 집계하여 범죄피해 현황을 파악·관리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통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마저도 불가능하다. 외국인범죄자에 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경우에도 국적별 통계를 구축하여 향후 피해자 관점의 인권 보호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보화 외(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여성 가족부, 2018.
-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7.
- 김혁/황태정/박상민,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대검찰청, 2020.
- 박형민/조성현/김선희,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II), 형사정책연구원, 2017.
- 성낙인, 헌법학 제20판, 법문사, 2020.
- 원혜옥/손진/홍민지/김재희/박상민/박경규, 범죄피해자보호제도론, 도서출판 피데스, 2018.
- 장병일/성홍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 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5판, 집현재, 2020.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 최영신/장다혜/오경석,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8.
- 최영신/장현석,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7.
- 최윤정 외(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19.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제8판, 박영사, 2017.
- 홍성방, 헌법학 개정6판, 현암사, 2009.
- Bundeskriminalamt(Hg.),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 Bundesrepublik Deutschland Jahrbuch 2019 Bd. 2 Opfer, 2019.
- FRANET,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e EU: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victims's rights in practice. Germany, 2014.

Miriam Reber, 10 Jahre polizeiliche Massnahmen gegen häusliche Gewalt im Kanton St.Gallen, Kanton St.Gallen Koordinationsstelle hausliche Gewalt 2013.

2. 학술지

- 김 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221-248쪽.
- 김혜경,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15-150쪽.
- 김혜정, “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127-152쪽.
- 박명선,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권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07, 271-303쪽.
- 이규영/김경미,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의 참정권”,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153-178쪽.
- 이은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8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69-193쪽.
- 이진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탐색: 자원봉사자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2016, 237-258쪽.
- 황태정/오경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지역적·국제적 협력”,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8, 31-57쪽.

3. 학위논문

- 박란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역할 연구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장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4. 세미나 자료집

최영승/윤동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방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효율화 방안연구, 법무부, 2006, 111-152쪽.

5. 웹사이트

경찰청, 2019 경찰범죄통계, 2020, 검색일: 2020. 12. 30.

_____,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2019, 검색일: 2020. 11. 12.

_____, 경찰백서, 2020, 검색일: 2020. 12. 30.

다누리가족지원포털, <www.liveinkorea.kr>, 검색일: 2020. 11. 30.

다누리콜센터상담실, 상담통계,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board/bs/boardList.do>>, 검색일: 2020. 11.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 검색일: 2020. 12. 30.

독일 연방 법무부, 피해자 안내서, <<https://www.bmjv.de/SharedDocs/Publikationen/DE/Opferfibel>>, 검색일: 2020. 11. 15.

독일 연방 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_inhalt.html>, 검색일: 2020. 11. 15.

바이서 링 홈페이지, <<https://weisser-ring.de/>>, 검색일: 2020. 11. 17.

스위스 연방 통계청, 경찰 범죄통계, 2020, 검색일: 2020. 11. 16.

_____, 스위스 인구, <<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bevoelkerung/stand-entwicklung.html>>, 검색일: 2020. 11. 16.

_____, 가정폭력 피해자, <<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kriminalitaet-strafrecht/polizei/haeusliche-gewalt.html>>, 검색일: 2020. 11. 16.

_____, 피해자 지원, <<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kriminalitaet-strafrecht/opferhilfe/beratungen-leistungen.html>>, 검색일: 2020. 11. 16.

여성의 집 협회 홈페이지, <<http://www.frauenhauskoordinierung.de/>>, 검색일: 2020. 11. 17.

인신매매 및 이주여성폭력 방지 협회 홈페이지, <<http://www.kok-buero.de/wir-ueber-uns.html>>, 검색일: 2020. 11. 17.

[Abstract]

Revie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Foreign Victims of Crime

—With Reference to the Case of Germany and Switzerland—

Park, Sang-Min*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criminal procedures for foreigners are also increasing. Foreigner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crimes in working relations or at home, as many cases of foreigners staying for reasons of employment or marriage. However, in general, foreigners are minorities in the country and may fac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compared to their own citizens, and in particular, they are in an environ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as Koreans due to their lack of acces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such as it is difficult to report damage due to their social and verbal vulnerability. Accordingly 「the 3rd Basic Plan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dentifies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s vulnerable to human rights and points out the need for a customized support system. As it is a national task carried out with a limited budget, consideration of foreign legislation and system operation is an important task in that it gives implications for ways to improve our system.

Crime victims are given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the state in terms of their obligation to discover substantial truth throug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uty to prevent crime, and duty to protect society. Our Constitution recognizes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by reciprocity, but human dignity and values should be equally important to foreigners(Article 10).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ne of the important tasks in criminal procedure is to substantially guarantee humanitarian assistance, as well as the right to state trial proceedings, and the right to claim

* Lecturer at School of Law, Chungbuk University, Ph.D.

relief for victims of crime, even for foreigners who have suffered crime.

Under this awareness,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 to identify problems, and seeks ways to substantiate the support system for foreign victims by referring to the case of Germany and Switzerland. It aims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Key Words] Foreign victims of crime,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Crime Victim Protection Act, German Victim Compensation Act, Swiss Victim Assistance Act